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55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승혜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에 관하여 2021. 2. 9.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33,489,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489,00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이던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선행소송의 판결에 따라 2023. 1. 10. 44,029,573원, 2023. 1. 11. 5,185,433원 합계 49,215,006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 이에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2021. 2. 9.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9, 10, 16,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C과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2021. 11. 29.경에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가. 원고는 2020. 9. 23. C과 사이에 ‘원고가 2020. 9. 10.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1. 1. 30.까지,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20년 제24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후 2021. 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압류(대구지방법원 2021타채923호)를 신청하여 2021. 5. 3.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C이 2021. 4. 16. 원고에게 “A야 내가 언제 너한테 삼천만원 돈을 빌렸나? 내가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 고소당하면 나보고 내라고 억지부려서 어쩔 수 없이 공증을 해줬는데 상간녀 고소를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아파트를 압류하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같은 날 원고는 C에게 “(C씨는) 위장이혼을 하기로 하고 B에게 G주택(이 사건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는 거로 하고. 참 가압류했던 H 아파트는 조정이 끝나지도 않은 1월 22일에 벌써 가압류 풀어주고 사해행위도 끝났으니 A가 공정증서로 뭘 해도 C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 놓았으니 할 테면 해보라고 부부가 잔치를 벌였지요.”, “어떻게 조합원 아파트를 압류 하냐고요? 이미 B한테 명의 주라고 조정에서 짜고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C씨는 무슨 상관이세요? 이혼하셨다면서요. 어차피 이젠 C씨 것도 아닌데. B는 2월 9일부터 자기 꺼라고 하던데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11. 29. C과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서 원고는 “C은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갈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를 아파트에 가압류한 것을 해지해주고,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피고에게 넘겨줌으로써 본인의 재산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였다.”, “드디어 (2021년) 2월 9일 조정기일에 참석한 두 사람은 유일한 C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B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꾸몄습니다. C은 모든 재산을 B에게 주어 자신은 무일푼으로 만들어 강제집행이 들어와도 행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저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피고소인들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중략) 서로 공모하여 미리 가압류를 풀어 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중략) 또한 저는 C을 상대로 여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해행위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라. 위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2022. 4. 4. C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선